

| | | |
|---|--|--|
| <h1 style="margin: 0;">보도자료</h1> <p style="margin: 0;">2018. 10. 2.</p> |  <h2 style="margin: 0;">대 법 원</h2> <p style="margin: 0;">Supreme Court of Korea</p> | |
| | 담당부서 | 인사총괄심의관실 |
| | 담당자 | 인사제1심의관 성원제 인사제2심의관 안금선 인사기획심의관 이재혁 |
| | 공보관실 ☎ 3480-1451 | |

대법관 제청

**-김상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제청-**

[제 청 내 용]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상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를 임명제청하였음

[제 청 경 위]

- 대법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갖춘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고자, 국민들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고,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

력, 주요 경력, 재산 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한 다음, 공식적 의견제출절차 등을 통하여 피천거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대법원장은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며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였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는 물론 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수집된 검증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 각각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그 중 3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였음
- 대법원장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하고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의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공식적 의견제출절차를 마련하여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사회정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소명의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하였다고 판단한 김상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를 임명제청하였음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 약력

1966. 1. 27.생 (52세) 대전 출생

1984. 2. 보문고 졸업

1989. 2. 서울대 사법학과 졸업

1988.10. 제30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0기)

1994. 3. 부산지법 판사

1998. 3.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2001. 8.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2004. 2.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7. 2.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2010. 2.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14. 2. 서울고법 부장판사



1996. 3.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

2000. 8. 독일 뮌헨대학 교육파견

2002. 2. 헌법재판소 파견

2006. 2. 제주지법 부장판사

2008. 2. 헌법재판소 파견

2013. 2.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2018. 2.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現)

○ 프로필

- 헌법 정신과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재판

199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4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능통함. 2002년 및 2008년 2회에 걸쳐 합계 4년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하고, 2004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근무하여 헌법 및 법률이론과 재판실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건에 적용되는 관련 법리의 근본정신을 탐구하여 합리

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음.

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실행한 인터넷 댓글 활동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헌법적 의의 및 공무원의 특정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상세하게 논증하고 위 활동이 금지된 국가공무원의 정치관여임과 동시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명백히 밝혀 공무원의 헌법 및 법률 준수 의무의 엄중함을 확인함. 팟캐스트 및 시사잡지 기사가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관련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언론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를 세심하게 고찰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함.

또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를 주최한 시민사회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및 이를 통한 국민의 의견표명 기회 축소 위험을 신중히 고려하여 일탈행위를 한 일부 참가자가 시민단체의 구성원이거나 그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주최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함.

- 신뢰받는 재판을 통한 궁극적인 분쟁 해결

사건에 대한 사전 연구 및 분석을 통하여 쟁점을 명확히 하고, 법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주의 깊게 경청하는 한편 실제로 억울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 충분히 주장 및 입증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판 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분쟁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함.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회사가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여 다툼이 있던 사건에서, 새로운 증거조사 방법을 제안하고 양 당사자의 동의 내지 협조를 받아 이를 실행함으로써 사안의 진상에 접근하고, 정리해고의 다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해고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함. 또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도 회사가 행한 대규모 정리해고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던 사건에서 수차례 조정기일을 진행하며 당사자들과 직접 대화하고 합리적 대안을 토론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정임에 임하여 대형 분쟁이 평화롭게 해결되도록 기여하였음.

- 존중과 화합의 리더십

소탈하면서도 활달한 성품으로 뛰어난 소통능력을 발휘하여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두루 신망을 얻고 있음. 법관으로서의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법원 구성원 모두의 고유한 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법원의 발전과 화합에 기여함.